통합연구

지대세제의 개념구조에 대한 접근

Approach for Conceptual Framework of Rent Taxation

이 대 환

ABSTRACT

The Bible says that man was created from the earth and he invented the capital as his means to carry out his missions of stewardship (Genesis 1 :).

The three elements of land, labour and capital, on which productive power and relation depend, function independently and there is also hierachical order among them.

The socialistic economic theories which focus on the egalitarianism try to explain the economic phenomena from the viewpoint of limiting the values of goods within the values of labour. And capitalistic economic theories emphasize the efficiency in their qualities, so they regard the capitalistic aspect of the productions as the most significant. When perceiving the values of goods, we have to admit the nature value which can be measured by a certain standard.

The Bible, centering around Leviticus that had been written in B. C. 1440-1400, had established perfectly the economic system which take the land (nature) as the basis of productions and human enterprises and pursue egalitarianism and economic growth through it. The Book commended the social security and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by exercising the right to economic control like the right to guidance in production, the right to distribution of production and the right to suspension of production, through the institutions like sacrificial offerings, the Tithe, the Sabbath-Day, the Sabbath-Year and the Jubilee-Year. And the Book also devised the ways of controlling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imultaneously, of the control of economic activities and of the economic reform.

In this paper, we suggest that the God's right to control over private economy can

be exercised by the way of rent taxation, even in the modern economic system. That does not violate the established right of private properties or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but rather promotes positively and can realize the economic justice through right distribution and proper growth.

제1장 머리말

성서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God)이 계시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정보가 성서이므로 성서는 진리의 정보체계(information system) 이다. 한편, 학문이 진리탐구를 위한 지식체계이므로 과학(science)은 일정한 인식목적과 합리적 방법에 의해 조직된 일련의 지식체계이다.

성서에 계시된 진리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추론된 진리가 다르고 영적 영역과 현실적 영역이 다르다는 성서와 학문에 대한 이원론적인 진리의 접근방법은 진리의 인식과정에서 이미 인간화 또는 세속화로 전락한다. 이러한 이원론은 진리의 추론과정에서 벌써 사단(Satan)에게 지배되어 성서와 유리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성서와 유리된 진리(사실 : fact)는 시간적으로는 한시적, 공간적으로는 부분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지동설과 천동설의 공존범위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본 하루의 시간과 공간적 영역뿐이다. 1년을 설명하면서 차이가 생기고 우주를 설명함에 있어서 후자는 잘못임을 알 수 있다.

성서에 근거하지 않은 한시적, 부분적 진리는 인간의 경험법칙에서 끝없는 과오와 궤도수정(feed-back)을 요구했다. 만약 수정의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이 직접 수정을 행하는데 이것이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인류의 공통적 비극현상이다. 인간적 수정과정을 G.W.F.Hegel은 역사적 변증법으로 체계화 시켰고, Thomas Kuhn 은 과학적 패러다임(paradigm)으로 설명하였다. 성서에 근거한 진리의 접근방법은 해석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인간의 인식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오류가 있고 시행과정상 수정이 요구될 수 밖에 없지만 한시적, 부분적 진리보다는 시행착오(trial and error)의 폭을 훨씬 좁힐 수가 있다. 이론(theory)이란 잘 증명된 이론이라기 보다 반증시도에 대해 잘 견디어 내는 이론을 말한다.[1)]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물질의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이나 회계학의 본질을 성서에서 구해야 하고 성서는 그 구체적인 실천원리와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기존의 이론적 구조에 맞추어서 지대세제에 대한 가설적 개념구조를 피력하고자 한다. 그러나 성서의 몰이해로 인한 우화적(allegorical) 해석과 오류, 경제학과 회계학의 소양부족으로 인한 논리의 비약과 착오가 있음을 서두에 밝혀둔다.

제2장 성서적 경제원리

1. 경제의 기원 (창세기)

필자소개

이대환 선생은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 대구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석사과정)를 마치고 현재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세금에 관한 몇편의 논문이 있으며,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두레성서연구모임의 회원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질서정연한 과정을 말해 주고 있다.[2] 빛을 만들고 이 빛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땅, 물, 태양, 동식물 등의 자연을 창조했으며, 이 자연을 원천(source)으로 하여 사람을 만들었다. 충분한 에너지원을 주면서 사람의 식물이 되는 자연물을 먼저 충만케(창1:22)한 다음 자원의 관리권(stewardship)을 사람에게 위임하고 땅을 채우라는 경제적, 문화적 명령을 내렸다(창1:26).

그러므로 모든 진리의 근원은 창세기1:1,2,3절에 있고 구체적 시작은 빛에서부터 하게 된다. 신학적으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요일1:6, 요8:12)되고, 자연과학에서는 창조질서와 자연법칙이 유도되며,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의 통치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 특히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다루는 경제학은 재화의 생산수단을 원시적 재료 (crude materials)인 자연에서 시작해야 하므로, 자연이 없으면 경제학은 성립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연의 관리권을 위임하기 앞서 치밀한 계획으로 발붙일 공간과 에너지와 식물을 먼저 만든 후 인간을 만들어 관리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관리권의 위임에는 창조질서에 준하는 경제법칙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동산 바깥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금단의 명령은 경제활동의 한계를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자연을 관리하되 보호할 의무와 인간 상호 간의 일정한 경제질서를 지킬 윤리적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창3:2-3).

동산중앙의 침범은 경제질서에 대한 최초의 위반행위이다. 이로 인해 사람은 땀을 흘리고 죽어 육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벌칙(창3:18-19)과 함께 새로운 경제질서로서 그룹과 화염검의 보호를 받는 생명나무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관리권을 위탁한 이상 가능한 한 경제행위의 행사에 대한 자유를 허용(창4:2,3,4)하지만, 제사법과 같이 규칙이 있고 허용의 범위를 넘었을 때는 직접적인 통제를 가한다. 그것이 홍수사건,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등이다. 한편 경제질서를 준수할 경우는 축복과 보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 아브라함, 요셉 등의 경제행위이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다음과 같은 경제학적 전제를 예측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경제법칙(창조법칙, 자연법칙)에 의해 자연이 창조되었다.
2. 자연을 원료로 인간을 만들었고 제한적인 관리권을 위임하였다.
3. 땅을 채우기 위해 인간에게는 자연과 달리 창의성을 부여하였고 그 창의성을 바탕으로 인간은 도구를 만들었다. 도구는 곧 자본이다.
4. 인간의 경제행위에는 땅과 사람, 그리고 도구사이에는 위계적 질서가 있다.

그외에도 일반적인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질서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지만 사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공적 경비는 자유로운 십일조(창 14:20,28:22)이고 정부가 있는 애굽은 강제성을 띤 세금이었다(창41:33-35).

2. 경제 제도 (레위기)

레위기는 선택받은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함에 있어 그들의 생활양식을 다룬 책이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워 회막(House of Lord)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사회제도를 확립시켜 사회질서와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원의 원천인 토지를 정점으로"토지는 내것이다(레25:23)"라고 선언하여 다각적인 경제통제권을 행사하며, 자연보호와 노동력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여 경기를 조절하고, 자연보호와 사회보장을 통한 재화의 생산력인 자연과 노동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레위기에서 자원의 원천인 땅과 생명의 근원인 피를 극히 중시하며 성서 전체의 영적 흐름인 인간 구원(salvation)과 연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3] 레위기에서 행하는 각종 규제는 하나님의 통제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제통제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을 인간에게 허락한 주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관리권의 행사방식이다. 하나님의 경제통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사제도를 통해 경제생활을 주도(guidance)한다(레1:1절 이하).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생산과 소비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제물(sacrifice)을 바쳐 경제질서의 윤리적 준수의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생산과 소비행위의 모형이 될 수 있고,[4] 두 종류의 육축과 씨앗의 혼합을 금지하여(레19:19) 유전공학의 남용에 대한 폐단을 경고하였으며, 경제질서를 위반할 시는 추가적 보상을 요구(레6:1-7)하고, 생산물의 일부를 거두지 말고 남겨서 가난한 자에게 돌리게 했다(레23:22). 이 당시 사막의 생활 여건상 생산물이 극히 적었음에도 수확을 규제한 것은 인간적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자비와 공

의의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물과 헌물을 요구하는 권리와 수확물 취득에 대한 통제를 편의상 하나님의 "경제주도권"이라고 하자.

둘째, 십일조(Tithe)제도를 두어 생산물의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십일조는 수확된 생산물 즉 확정소득(결산소득)의 10%이며(레27:30) 공경비로서 공공기관의 운영비와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레위인과 가난한 자에게 돌려진다(신명기14:22-29).

십일조는 생산의 측면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자연자원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며 소비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기능을 갖고 있다. 십일조를 편의상 "소득 분배권(청구권)"이라고 하자.

세째, 가장 강력한 경제통제권의 행사방안으로 생산활동 자체를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7일 마다 하루를 쉬어야 하는 안식일(the Sabbath-Day)과, 절기, 안식년(the Sabbath-Year), 희년(Jubilee-Year)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노동이 금지되며, 소나 말도 쉬게 하고,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여 자연을 보호한다(출20:9,신5:12-13), 7년마다 1년씩 쉬는 안식년에는 생산활동은 완전히 정지되며, 땅이 쉬고 자연생산물은 가난한 자와 동식물의 몫으로 돌려진다(레25:3-7). 자유가 보장(출21:22-6)되고, 채무도 면제된다(신15:1-6).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제도는 경제통제권 행사의 극치를 이룬다. 안식일과 안식년의 생산정지활동은 계속되며, 자연과 사람의 안식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자유가 선포되고 경제적으로 토지를 재분배하는 영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대개혁을 하게 된다(레25:8 이하). 이를"생산정지권"이라고 하자.

이와같은 강력한 생산정지권의 행사는 자원의 원천인 자연과 노동력의 원천인 사람을 쉬게하여 생산자원을 보호하고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이웃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사회보장 기능과 생산량과 소비량을 조절하는 경기조절적 기능까지 하게 되어 있다. 이는 현대 경제학이 해결하지 못한 각종의 경제문제를 B.C.1440-1400년경에 이미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의 내용 (신약)

창세기가 경제의 기원을 다루고 레위기가 경제제도를 다루고 있다면 신약은 그 내용 즉 경제의 본질 (essence)를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한 가르침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하늘과 땅의 관계로 나누고 땅의 관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마6:11)"라고 하여 경제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하였고[5] 산상수훈(마5:3-11)의 내용은 경제의 본질적 행동원리이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음에도(요2:9) 돌로 떡을 만들라는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여(눅4:4) 비윤리적인 경제생활과는 타협하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자원(은혜)의 해'를 선포하여(눅4:18-19) 자발적 희년을 실현하도록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자를 돕고 토색한 자를 질책하여 경제정의를 가르쳤다(마21:31-46).

'자원의 해'는 말 그대로 'acceptable year'인데 성서에서는 번역이 잘못되어 '은혜의 해'로 되어 있고 이 구절의 해석 여부에 따라 정통 기독교와 해방신학의 차이점이 나타난다.[6] 해방신학은 은혜의 해를 완성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혁명도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자원의 해'는 '스스로 원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 해석은 잘못이다.

자원의 해가 현실경제생활에서 실현된 것은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초대교회 교인들의 생활모습이다. "믿는 무리가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행2:44-45)"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라고 하여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 즉 Koinonia 를 이룬다. 이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분배는 자발적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발적 희년의 모습에서 볼 때, 인간의 탐심이 사라지고 자발적인 경제공동체의 모형인 예수님의 공생애, 타락전의 에덴동산과 타락 후의 초대교회, 재림시의 천년왕국(계20:4)과 신천지(계21:1)의 경제활동은 하나의 이상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을 통해서 가시적이나마 연결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진자에 대한 질책과 가난한 자에 대한 위로는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를 인정하고 있는 결과이며 세금에 대하여는 "가이사(정부)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마22:21) 정부를 인정하였다. 물론 여기서 현실제도의 인정은 무한적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원리(이론)의 배경

1. 경제 체제

경제학에서 연구되어 온 제원리나 현상을 설명하기란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법과도 같이 복잡하고 어렵다. 복잡한 경제현상을 해석하면서 본질을 규명하지 않으면 이론 자체가 형식화되어 각고의 노력으로 체계화 한 이론이 율법이 되고 나아가서는 이론의 우상화로 전락한다. 경제학이 무엇인가 하는 경제철학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경제학은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원리를 도출하여 인간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한 세기 이상 세계의 경제체제는 효율(efficiency)을 중시하며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capitalism)와 전생산수단을 국가통제로 하여 형평(equity)을 중시하는 사회주의(socialism)가 양립되어 있었다. 양체제는 서로가 체제의 우위를 내세우면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켜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보다 고통과 불안을 고조시켰다.

사회주의적 접근방법은 형평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결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낸 반면, 서구 자본주의적 접근방법은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역시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7] 양체제를 뒷받침한 경제이론은 한결같이 토지에 대한 경제적 기능을 소홀히 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는 한국에서는 1800년경 실학의 대가인 다산 정약용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고, 서양에서는 1815년경 David Ricardo에 의해 부각되고 1879년경 Henry Georgy가 집대성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산과 Georgy의 사상적 배경은 성서적 경제관에 기초를 두고 있어 공통점이 있다. 다산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체(community)를 기반으로 하는 여전제를 주장하고 공평한 십일세 제도를 제창하였다.[8]

한편 Henry Georgy는 생산의 3요소 중에 토지를 가장 중시하면서 사적 소유와 공적 이용을 병행하는 토지단일세(land single taxation)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구별되는 "지본주의(geocracy)"라는 주장도 있으며,[9] F.Harrison은 아담스미스가 제창한 자유방임 경제체제와 토지단일세를 통한 토지공유화를 결합한 접근 방법, 즉 Henry Georgy의 접근방법이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이며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묘책이라고 하였다.[10]

토지중심의 경제체제가 성서적 경제원리에 부합한다면 현재 위기에 직면한 양체제는 성서가 제시해 준 경제제도를 무시하고, 인간이 만든 제도의 시행에서 기인하는 존속 여부에 대한 한계성을 말하는 것이며, 한세기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성서로 돌아가야 하는 역사적 검증이요, 인류의 공통적인 고백일 수 밖에 없다.

2. 가치이론과 경제적 현상의 의문

성서는 자연을 먼저 만들고 자연을 원료로 노동의 원천인 사람을 만들었다. 또한 사람이 노동의 절약과 능률을 위해서 도구를 만들었다. 이것이 생산의 3요소인 토지,노동, 자본의 형태로 가시화 된다. 생산과정에서 이들의 생산기능은 역학관계에 있고 상호 독립적이며 위계질서가 있다[11]고 본다. 그러나 현대경제학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인간중심주의 때문에 자연의 제1차적 기능을 무시하고 토지를 제3차적 기능인 자본에 예속시켜 버렸다.

그러므로 경제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시적 생산함수 $Y = F(L,K)$ 는 토지를 자본의 한 구성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잘못이다. 생산함수는 국민소득을 Y, 토지를 E, 노동을 L, 자본을 K 로 할 때 $Y = F(E, L, K)$로 표시하는 것이 더 성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가정에서 기존의 경제현상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몇가지 통념들은 성서와 결부시켰을 때 의문점이 생긴다. 여기서 의문점이라 함은 이론자체의 진위를 따지기 보다 성서가 중요시한 토지의 자연가치를 무시함에 따른 경제적 현상을 말한다.

첫째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결합되어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기능상으로 토지가 가장 중요하다. 즉 토지가 노동을 가능하게 하며 노동이 자본을 만든다. 부등호로 표시하면, 토지 > 노동 > 자본의 순서이며 이는 자연의 질서이고 생산과 분배에 대한 성서적 경제원리라고 할 수 있다.[12] 고도화된 기술을 자본의 기능으로 보더라도 부모없는 자식이 없듯이 토지≧노동≧ 자본의 등식이 가능할 뿐이다. 이것은 야산에서 도토리를 따는 자연채취업이든 도시에서 고도의 용역사업인 심부름 센터이든 로버트 생산시스템이든 무차별 적용되어야 하고, 생산물 1단위에 대한 재화의 가치

는 토지가 제공하는 자연가치, 노동가치, 그리고 자본가치의 유기적 결합관계로 구성된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이론으로 발전한 고전학파와 Karl Marx 의 노동가치설(theory of labour value)은 재화의 모든 가치를 노동의 산물로 보고 그 결과 잉여가치설을 발전시켰다. Marx가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생산력(forces of production)과 생산관계(product relation)에서 노동 대상인 토지와 노동수단인 자본을 구분해[13] 놓고서도 분석과정에서 토지와 자본을 동일시하고 자본가에 예속된 노동수단을 노동자에게 돌려 주기 위해서 계급혁명을 합리화시켰다.

원래 노동가치설은 Ricardo 가 지대나 이윤이 노동에 있다고 하여 부가 자본에 집중하는 현상을 지적함에 있어서는 공을 세웠으나, 무신론자들에 의해 발전된 유물사관은 극단적인 잉여가치설을 내세워 자본을 비판하는 무기로 전환되고 말았다. 신이 부여하는 자연가치를 부인함으로써 노동이 생산의 도구로 기계화 되어 버리고, 자본기능을 축소시킴으로써 분배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효율이 떨어져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개혁정책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소련공산당은 1987년 6월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가격 형성에 관한 근본적 개혁이 경제관리 페르스토로이카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가격형성의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와 단호하게 손을 끊고 ... 생산의 효율향상..... 심화를 위한 유효한 용구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14] 라고 하여 가격과 가격형성의 문제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 사회주의의 한계점을 공인하고 있다. 최근에 소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르스트로이카(개혁)는 사적 소유의 개념을 사회적 소유와 기계적으로 구분하는데 반대하고, 이윤과 잉여가치를 동일시 하는데 반대하고, 시장경제나 경쟁을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일치시키는데 반대하고, 가격 및 효율로 사용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부르조아적임을 단정하는데 벗어나고 있다.[15]

노동가치를 일반적으로 생산의 측면에서는 가장 객관적 가치라고 하지만, 자연의 가치와 자본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어 역시 효용가치처럼 주관적 가치라고 하겠다.

세째,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는 효용가치설(theory of utility-value)을 전제로 시장경제원리를 발전시켰다. 효용가치는 재화의 가치가 인간의 욕망에 근거하고 주관적인 만족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효용가치설은 교환을 전제로 한 시장경제의 기초원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에서의 장자권과 야곱의 죽 한 그릇이 동일효용으로 평가되어지는 한(창25:27-34), 그 교환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장 경제원리의 약점이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교환은 효용이라는 주관적 가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이기적이거나 경솔한 행위가 시장질서를 왜곡시킨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객관적 가치(사회총평균효용)로 보면 에서와 야곱은 가치측정에 심한 오류를 범했다. 성서는 에서가 장자권을 경솔히 여겼다고 한다(창25:34).

예수님이 40일의 굶주림에서도 장자권을 떡 한 덩이와 교환하지 않았음을 볼 때, 교환이 성립되었다고 거래가 정당한 것만은 아니다. 장자권과 죽의 교환에서 주관적 판단기준인 효용가치에서 하나님이 제공하는 자연가치가 자율적이든 강제적이든 개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시장왜곡현상은 줄일 수 있다. 불공정 거래는 사후에도 노동자 기질의 에서와 전형적인 자본가 기질의 야곱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때,노동이 상품화 된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원리는 수요공급의 법칙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효율성의 측정에 있어서도 자본주의는 파레토 원리(Pareto's principles) 즉 타인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어떤 사람의 효용도 증가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가정에서 효율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자원의 극대생산만 고려할 뿐 자원의 분배측면은 무시하고 있다. 파레토 최적조건이 성립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확보되지만 공정한 분배상태가 아울러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다.[16] 파레토 최적의 개념은 거기에 관련된 인간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순전히 물리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17] 그러므로 여기서는 인간의 사회적, 윤리적 가치판단의 문제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파레토 최적조건이 성립되어도 배부른 자와 굶주린 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재화 1 단위의 한계효용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에서와 야곱이 초대교회 성도라면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용가치설에 근거한 시장경제 원리, 즉 가격기구는 정부가 제한적 통제를 가하던가 교회나 교육이 욕망을 다스려 주어야 한다. 전자를 절대시 하면 사회주의적 접근방법이 되고, 후자를 중시하면 성서적 접근방법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적 접근방법은 전자와 후자를 혼

용하면서 임시방편적 수단만 강구하고 있다.

Adam Simth 는 정부통제를 부인하고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자유방임적 경제원칙을 제시했으나, 1929년 세계 대공황은 J. M. Keynes로 하여금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정자본주의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믿고 있던 시장경제 원리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개입한 수정자본주의 마저도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보이지 않는 큰 손(invisible big hand)'[18] 에 의해 좌우됨을 볼 때, 우리는 조속히 성서로 되돌아가서 완전한 경제학자인 창조주의 '보이지 않는 힘(Invisible Charisma)'에 순응해야 한다. 경제법칙의 성서적 복귀는 흔히 종교인에게 느끼는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신앙적 차원이 아니고 이미 과학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립해 놓은 성서적 경제원리를 신앙고백적 차원이든, 과학지상주의를 부르짖는 학문적 차원이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함을 말한다.

네째, 경제학의 기본전제인 자원의 희소성(scarcity)에 대한 문제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욕망을 채워 줄 재화(자원)는 유한하다는 희소성은 재화 < 욕망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경제학의 목적이 재화의 생산에 있다면 재화의 생산량을 100배로 증가시켜도 욕망 또한 100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학적 접근방법은 해답이 없는 것이다. 흡사 다람쥐 체바퀴 돌리기식이다. 물론 희소성을 부정하거나 비현실적인 금욕주의적 접근방법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의 목표는 재화 = 욕망이어야 한다. 희소성의 문제만을 가지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절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하다.[19]

성서적 관점에서 자원은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는 한 전반적으로 충분히 주어져 있다(레26:5,신30:9-10). 하나님은 자원관리권을 인간에게 위탁하면서 땅을 채우라는 지상명령에 앞서 자연자원을 충만케 하였으며(창1:22), 땅의 티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보다 많은 인구 증가를 예견하였다(창22:17). 최악의 경우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다(출16:4).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은 선악과에 대한 경제윤리를 위반한 대가이므로 자연의 개발이나 관리는 역효과를 고려해서 신중해야 함을 말한다.

경제학이 해결해야 할 식량자원과 에너지 문제는 자연에 대해 인간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수행할 경우 충분히 주어진다. 즉,자연의 개발가능성은 무한정하다.

물론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나 안전의 욕구(safty needs)가 충족되지 못하는 절대빈곤국가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표를 재화의 총량증대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선진국가의 경제적 목표는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욕구의 문제와 아울러 생산의 양적 증대 보다 분배의 질적향상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른 경제적 비관론이다. T.R.Malthus는 1815년 공황의 원인을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찾으면서 지주와 같은 불생산계급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20] 과 함께 수확체감의 법칙을 확립하였는데, 이에 따른 역사적(장기적) 비관현상은 본정신에 위배된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기술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단일기업이 단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고 이 때에도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즉 비용체감의 법칙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단기적으로 볼 때 일정한 토지(국토)에 국가경제 단위가 투하할 노동과 자본은 한정되어 있고 개별경제 단위에서 보더라도 동일규모의 A 기업(지역)의 수확체감 현상과 B 기업(지역)의 수확체증(비용체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수확체감률보다 수확체증률이 높은 한 국가경제단위의 생산량은 체증한다.

Henry Georgy 는 Malthus 의 비관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어느 특정한 해에 기술수준이 고정되었을 때, 단위 면적의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계속적으로 더 투하할 때, 총생산은 증가될 지 모르나 단위당 노동과 자본에 대한 한계생산은 점차 감소한다. 그러나 기술개량이 일정기간 일어나면 노동과 자본의 단위당 한계생산은 증가한다."라고 하여 (그림1)와 같은 추세를 예측하고 있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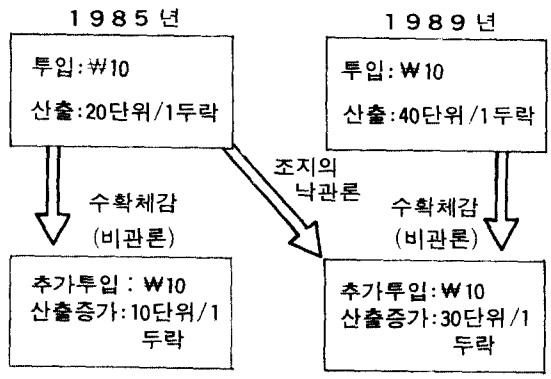

(그림1) 수확체감과 기술개량

일반적으로 토지에 가해지는 노동과 자본의 기능이 균형만 이루어지면 토지가 제공하는 자원은 무한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율 보다 경제성장률이 앞선다.후진국의 식량문제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원에 대한 노동과 자본이 균형을 잃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Malthus의 인구론은 공황의 원인을 유효수요에서 찾고 인구증가와 경제적 부양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는데에는 공헌하였다고 하겠으나, 그의 이론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쟁, 기아, 범죄 등의 사회적 역기능을 정당화하고 인류를 역사적 비관자로 방치한 것은 우리가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 경제학의 대상인 재화를 구분함에 있어 자유재(free goods)에 대한 재고이다. 빛, 공기, 물 등은 무한히 주어진 것으로 보고 경제적 의사 결정에서 제외시킨 것은 재화의 자연가치를 무시한 결과이다. 자연의 숲에서 과일을 채취하는 것이 노동이면, 밥먹고 물마시고 숨쉬고 햇볕을 쬐는 것도 역시 노동이다. 다만 자유재는 생존에 있어 더 필요한 재화이기에 창조질서에 따라 충분히 주어지고 취득이 쉬울 뿐이다. 토지라는 일정면적의 경제재는 이러한 값진 자연가치를 대표한 것이며,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natural fertility) 는 자유재의 공급 용이성에 따라 달라진다. 양지와 음지, 사막과 오아시스, 온대지방과 한대지방, 지구와 달의 경제가치는 자유재의 공급 여하에 달려있다.자유재를 의사결정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흔히 말하는 환경비용(environment cost)이나 공해비용(public pollution cost)은 자유재에 대한 사후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일곱째, 일반적으로 공황(crisis)은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여 일어난다. 성서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기능을 철저하게 짜 놓았다.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두어 과잉생산을 억제시키고, 성회를 열어 수요를 촉진하는 경제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기변동(business cycle)만 하더라도 콘트라티에프 파동(Kondiratieff's waves)은 장기파동이라 하며 50-60년 주기를 가지는데 이는 50년마다 경기를 조정하는 희년제도와 관련되고, 쥬글라파동(Juglar's waves)은 중기파동이라 하며, 7-10년이 주기를 가지는데 이는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근검 절약의 정신과 소비는 미덕이라는 이율배반적 논리는 안식년, 희년을 기준으로 재조정되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

실업(enemployment)문제만도 실업의 원인을 Malthus는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른 자본축적의 빈약, Marx는 기술진보,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인해 인간노동이 기계에 대체됨에 따라, Keynes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온다고 하였다.[22] 그러나 생산의 과잉으로 인한 공황이나 유효수요의 부족은 그 원인이 분배의 불균형에 있고 공황과 실업은 결과일 뿐이다. 실업은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역학관계에서 틈(gab)이 생겨 일어난다.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대상인 토지와 노동수단인 자본이 노동에 균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노동수단인 자본의 공급보다 노동대상인 토지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성서는 일찌기 토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여 독점을 막고 토지의 균등이용을 요구하고 있어(민26:53-54), 구조적 실업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제4장 회계시스템과 기능적 지분의 인식

1. 회계학적 접근 방법

회계학(accounting)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체계는 레위기의 식사법처럼 혼란스럽다. 회계는 복잡한 경제현상이나 환경 속에서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동양식이 재무적 흐름을 통하여 회계라는 표현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1966년 ASOBAT 이후 이론의 기지개를 펴고 나선 회계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학자나 관련기관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표명되어 경쟁적인 패러다임(paradigm)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회계학의 접근방법은 실용주의적 접근방법, 윤리적 접근방법 등 여러가지의 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다.[23] 물론 이들의 접근방법이 상호 배타적이라기 보다는 보완적이며 관련성을 갖고 대립과 조화로써 발전하지만, 그 본질을 바로 규명하지 않으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회계학이 논의에서부터 이미 낭비를 초래한다. 이때 회계의 본질, 그 추구하는 목적이 성서에 있다고 볼 때 당연히 성서적 접근방법을 취하게 된다.

이것은 회계의 책임(accountability)인 수탁관리기능, 즉 청지기(stewardship)의 사명을 규명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청지기의 역할은 자원의 제공자(위탁자)인 하나님과 수탁자인 회계담당자의 위임관계로 풀어야 한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의 작성원칙인 계정법칙을 빌려 설명한다면 차변은 운용상태를 나타내고 대변은 그 조달

원천, 즉 자원의 주인의 몫(lot or equity)을 나타낸다. 이를 등식화하면, 자산(assets) = 지분(equity)이라는 회계등식(accouting equation)이다. 여기서 청지기의 사명을 계정법칙으로 등식화하면, 자산 = 하나님의 몫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회계등식은 자산 = 자본(타인자본 + 자기자본)으로 표시하고 있어 주주와 채권자인 자본가의 충실한 종의 역할을 대변한다.

계정이 개발된 역사적 배경도 회계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시사를 준다. 2,000년 전 로마제국이 인접국가를 침략하여 자유민을 노예로 삼았을 때에 약탈자가 노예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면서 계정이 시작되었다.[24] 본래 약탈자와 노예간에 성립되는 주종관계가 지금은 주주(stockholder)및 채권자(creditor)와 회계담당자(accountant)라는 세련된 용어로 표현되어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 본질적으로 회계는 이론적이든 실무적이든 종(청지기)의 직능을 벗어나기 힘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회계는 주종관계를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종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만다.

한편 Marxism에 근거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계정법칙에 대입시키면, 자산 = 노동자의 몫 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모든 자원은 형식적으로 노동자의 소유물이지만 부르조아적 계급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분할될 수 없으므로, 자산 = 국가(또는 공유)의 지분이 되고 만다. 따라서 국가나 정부가 하나님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면 노동제공자인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이상형이지만,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이 대신하는 정부는 기능이 커질수록 역기능만 초래하므로 무신론에 근거한 유물사관은 계급혁명과 1당(노동당)독재의 경제형태를 취하게 된다.

2. 기능적 지분의 인식

기능적 지분이란 기업이라는 생산시스템의 구성에 있어서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3기능을 동시에 인정하고 몫을 측정,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붙였다.

생산활동에 있어 자연적 기능은 기업이 점유한 토지에서 행하여지고 주인은 하나님(일종의 공유물)이며, 인적기능은 노동을 소유한 사람이 주인이고, 자본은 생산의 도구를 소지한 자본제공자인 조직이다. 이는 자연에서 사람나고 사람이 도구를 만든다는 성서적 경제원리에서 근거한다.

기존의 회계시스템은 자산을 용역잠재력(service potencials)으로 규정하면서도 자연은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고, 노동은 측정이 곤란한 것이라는 이유로 자연의 생산기능은 무시하고 노동은 자본이 고용한다는 암묵적 승인아래 자본만이 기업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기능을 자산으로 보고하자는 인적자원회계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자연기능에 대한 논의는 없다. 물론 자연기능은 기업의 공간적 영역인 토지에서 찾아야 하는데 회계학에서 토지에 대한 언급은 지극히 단순하다. 토지의 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생산자원(자산)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노동력 제공자인 사람을 담고 있으며 빛,물, 공기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 수산자원 등 무수한 천연자원을 담고 있는 창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는 Raymond Abrams 는 토지가 "만물의 어머니"[25] 라고 했다.

(2) 토지가 담고 있는 자연자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티끌만큼도 생산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노동과 자본이 토지에 가해져서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이다.

(3) 토지는 감가상각(depriciation)을 하지 않는다. 사실 이 점이 회계학적으로 가장 미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financial statement)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는 (그림2)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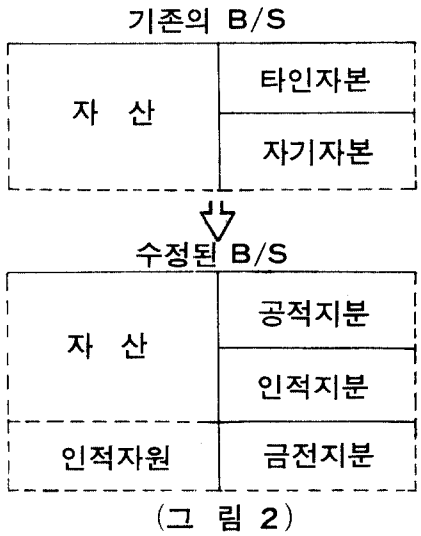

(그 림 2)

(그림2)에서 공적지분은 공동소유물인 자연자원을 담고 있는 토지가치이며 이는 기업이 창조한 부가가치(value added)에서 공적부담금인 헌금,세금 그리고 공과금의 형태로 청구권(right to assets)를 가진다. 토지는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이며 업무용, 비업무용을 불문하고 토지 임대료를 포함하며, 토지에 정착된 다른 부동산(건물과 건물임대료)은 제외된다. 토지제공자는 자본주의 형태에서는 사적소유와 공적이용의 형태를 가지므로 정부나 교회가 상징적인 제공자가 된다.

인적지분은 생산물에 투여될 가치를 갖고 있는 노동이며 임금 및 급료의 형태로 청구권을 갖는다. 경영(management)과 인적기술(human technique or skill)은 노동이다. 노동제공자는 기업 구성원인 사람이다. 그 평가방법은 역사적 원가법, 대체원가법, 기회원가법, 임금현가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26] 금전지분은 효율적 생산활동을 위해 빌려쓰게 되는 도구로서의 생산수단인 자본이다. 이자와 배당이라는 형태로 청구권을 가지며 자본 제공자는 사적소유와 사적사용의 형태로 사람이라기 보다 노동에 의해 조직된 기관(은행, 증권시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지분의 구성

	원천	제 공 자	청구권	배 당	자 원 의 형 태
기	토지	신, 자연[가]	공적지분	세금, 공과금	땅과 부부속자원+α [나]
업	노동	사 람	인적지분	임금, 급료	노동, 경영, 인적기술+β
(lot)	자본	기 관	금전지분	이자, 배당	물적재화, 구입기술+γ

가) 현실경제체제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상징적인 제공자이다.

나) α, β, γ는 감가상각과 증가계산이 관련되고 회계학에서 특수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의 회계제도는 세금과 임금이 기업의 타기업 이전가치인 비용과 같이 취급되고 자본제공자의 몫인 이익(income)만이 기업의 영업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가의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주의 정신[27]과 과학적 의사결정의 산물인 비용절감의 법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세금과 임금을 최소화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세금절감(tax saving)의 필연성 때문에 보수주의(conservatism)를 가장한 비윤리적 회계처리방법이 강구되고 심지어 탈세(tax evasion)수단까지 동원된다. 성서적으로 볼 때 임금문제도 이론적으로 우위에 있는 노동과 현실적으로 상위에 군림하는 자본과의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회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분의 순환과 균형표

기업의 기본적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B/S: Balance Sheet)와 손익계산서(I/S : Income Statement)이다. 거래(transaction)로 나타나는 경영활동은 양재무제표에서 자본 --> 자산 --> 비용 --> 수익의 형태로 표시된다. 거래에서부터 재무제표의 작성과정을 회계의 순환(accounting cycle)이라고 한다면 자본에서 수익으로 환원되는 일련의 과정을 몫을 가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투하된 자본이 자산, 비용, 수익으로 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의 순환(equity cycle)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3)과 같다. 기업의 활동은 굴러가는 바퀴와 같이 원의 모습이어야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의 회계시스템은 기능적 지분회계를 하지 않고 자본가 중심의 회계이기 때문에, 기능간에 유기적 결합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겨 모가난 사각형의 모습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원의 모습 안에 있는 K --> A --> P --> R의 순환과정은 기업의 활동이 곧 사회의 이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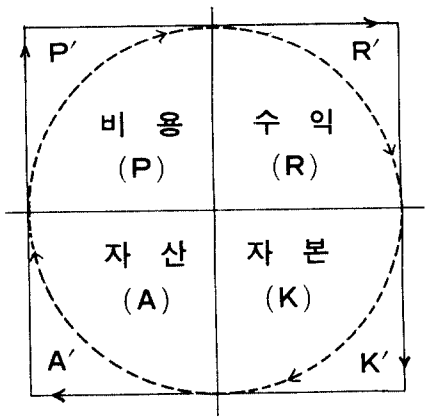

(그 림 3)

일치하는 정(positive)의 순환영역이고, K' --> A' --> p' --> R'의 순환과정은 기업가(자본가)의 이익은 될지 몰라도 사회적 이익은 없거나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는 부(negative)의 순환영역이다.

K'는 투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연기능과 노동기능이 배제됨으로써 경영의 자본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효율은 극대화되나 장기적으로 공해와 분배문제에 대한 기업갈등을 예상하는 영역이다. 자본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이윤만 예상되면 경제윤리는 무시되고 인신매매업도 투자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볼 때 K'의 영역은 물탄주식(watering stock)과도 같은 기능을 한다.

A'는 기업활동에 공헌하지 못하고 놀고 있거나 은닉된 자산이다. 비밀적립금, 과다 보유의 부동산, 특수관계자[28] 만이 활용하는 기업자산, 고가매입과 저가양도용 자산이나 불량채권 등이다.

P'는 낭비성 지출, 비윤리적 지출, 공해로 인한 환경 파괴로 기인된 사회적 손실을 말한다. 정치적, 행정적 결탁을 위한 커미션, 로비자금, 과다한 접대비와 기밀비 등이 포함된다.

R'는 K'--> A' --> P'의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불로소득, 폭리, 착취현상으로 나타난다. 기업이 회계정책상 쓰여지는 이익조작과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도 지나치면 여기에 속한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개별기업의 K'--> A'--> P'-->R'이라는 부정적 순환 때문에 사회적 정의가 훼손되고 부(wealth)의 증대가 곧 복지(welfare)의 증대를 수반하지 않는 괴리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세금과 임금이 자본이익인 배당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부가가치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림4)와 같다. 이 표는 기업의 재무제표인 B/S 와 I/S에 사용되는 T자 계정을 십자가틀에 집어 넣은 것이다.

왼쪽은 차변(debit),오른쪽은 대변(credit)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수평선을 중심으로 밑변은 기존의 B/S 이고 윗변은 부가가치 I/S이다. 화살표는 기업의 활동이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며 가치창조를 위해 지분이 순환함을 나타낸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부가가치 계산서(Value Added Statement) 특징은 기업이 추가로 창조한 부가가치인데 기존의 회계시스템에서 비용으로 취급되는 세금과 임금이 주주의 몫인 배당과 동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회계제도는 자본가만이 기업의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노동자 자본가 등의 이해관계자 전체를 기업의 주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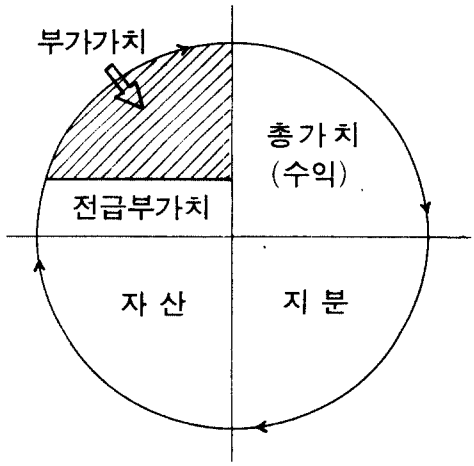

(그림4) 지분의 순환

생각하는 기업공동체적(business community or team)인 경영철학이 반영된 경우이다.

투입된 지분과 배당된 지분과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림5)와 같다. (그림5)에서 중심부의 원은 감가상각으로서 지분의 순환에 중심적인 축을 이룬다. 감가상각은 역학적 기능을 하면서 기업이 순환하도록 엔진의 역할도 하며 지분의 이탈을 방지하는 인력작용까지 겸한다. 토지, 노동, 자본의 3요소는 감가상각의 개념을 설명하면 기능상의 차이가 뚜렷해진다. 건물,비품 같은 도구는 기존의 감가상각으로 이해가 되지만 노동과 토지는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 노동은 처음에 건설가 계정처럼 증가하고(미성년자의 성장) 생산에 노동이 제공된 후에도 내용연수(근속연수)의 전기간을 통해서 초기는 증가하고 후기는 감가한다. 여기서 노동에 대한 감가상각의 개념은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만의 계산은 불가능하고, 기업에 투하되는 노동자의 총량(aggregate)에서 파악해야 한다. 토지는 더욱 특수하다. 노동과 자본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모(wear)와 기능적 진부화(obsolescence)가 일어나지만, 토지는 사용하지 않으면 감가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사용하더라도 토지의 감가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공해 문제 등과 같이 사회전체의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성질이지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쉽게 인식되지 못한다. 또한 사회전체적으로보더라도 A 지역에서는 감가가 일어나고 B 지역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등으로 증가가 일어나는 특수한 생산 자원이다. 이를 볼 때 토지는 개인의 사유물로서가 아니고 사회적 공유물로 파악해야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림5)에서 기업활동은 시계방향으로 순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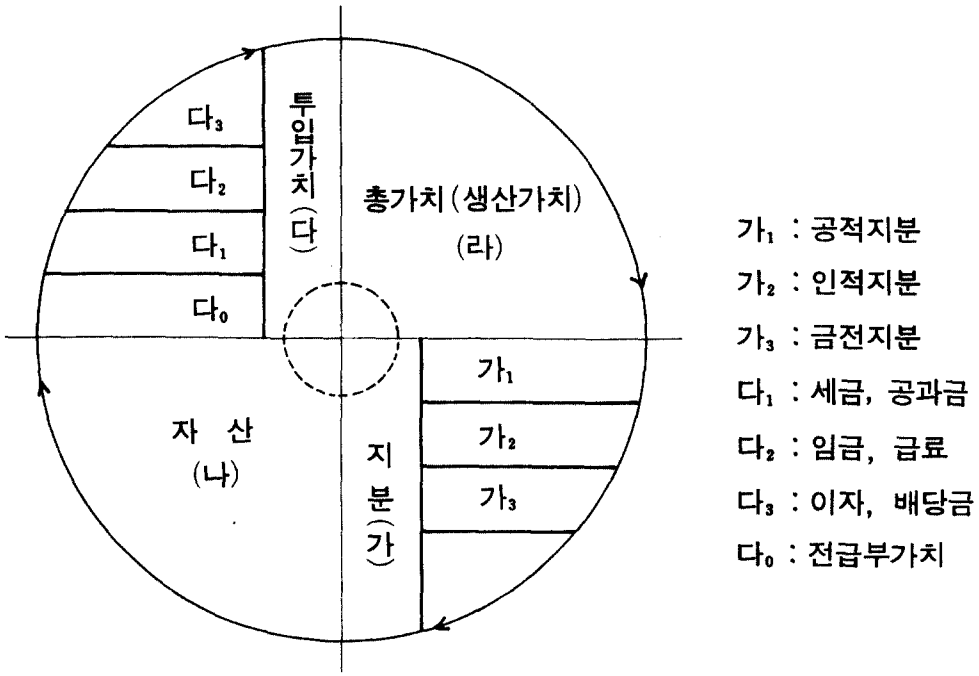

(그림5) 지분, 가치, 배당관계

다. 가--> 나 --> 다 --> 라 의 순환에서 왼쪽은 오른쪽에 대해 투입(input), 유입(inflow) 또는 저량(stock)의 성질을 가지고, 오른쪽은 왼쪽에 대해 산출(output), 유출(outflow) 또는 유량(folw)의 성질을 가진다.

가와 나는 소유관계(ownership)로 생산자원의 투입과 분포를 나타낸다. 나와 다는 거래관계(trade-off)로 자산의 투입과 가치전환을, 다와 라는 성과관계로 가치 창조를 위한 투입과 그에 따른 효율을 나타내며, 라와 다는 투자관계로 기업구성 또는 가치창조의 역학관계 또는 결합관계를 나타낸다. 기업의 부가가치와 기능적 지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잇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기능(요소)적 지분에 대한 정보는 생산과 분배에 대한 인과성이 밝혀짐으로서 분배문제에 대한 갈등해소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즉,경제정의의 실현과 산업민주화(industrial democracy)를 추구하게 된다.

(2) 개별기업의 부가가치 총계는 사회적 지표인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ccount)과 일치하여 GNP산출과 각종 경제적 통계자료의 검증 가능성이 커진다.

(3) 공적지분과 정부에 배당하는 세금정보의 표준화가 이루어 진다. 사실 회계보고 중에 가장 비합리적인 정보가 불규칙한 세금으로 인해 초래되는 회계이익의 왜곡현상이다.

(4) 기업간의 비교척도로써 부가가치는 외형적 기준(매출액, 자본금)에 의해 야기되는 오류를 제거한다. 기업구성원인 노동자가 적어도 자본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기업보다 크고 중요하다는 인식상의 잘못을 예방한다.

(5) $가_1$와 $다_1$로 연결되는 부가가치는 기업의 토지와 직결되고 자연이 인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자연가치의 측정기준이 된다.

한편 문제점도 예견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평가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토지, 노동, 자본의 기능적 관계를 규명하는 기본사고의 차이와 제공자의 이해관계이다.

또한 부가가치 회계의 문제점을 M.F.Morley는 부가가치계산서와 손익계산서의 혼돈, 타기업에 의해 구매된 전급부가치 ($다_0$)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혼돈에 따른 그릇된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29]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단식부기가 복식부기로 바뀐 회계보고가 이해관계자에게 어렵고 혼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정도의 문제점을 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에게 복식부기가 어렵다고 가계부처럼 단식부기를 고수할 수 없듯이,정보이용자의 이해

부족을 이유로 자연과 노동이 창조한 가치를 자본 가치(이익)와 다르게 보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회계정보가 자본가(소수경영노동자 포함)들의 의사결정 장소인 기획실, 주주총회, 증권시장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보이용자를 위해서 있기 때문이다.

제5장 지대세제

1. 지대와 자연가치

지대(rent)는 자연가치(natural value)가 재화의 구성요소에 결합된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공적 소유물인 자연물을 담고 있는 토지가 기업의 생산물에 공헌한 가치를 말한다.

경제학에서 지대는 고전학파인 Ricardo와 Malthus의 논쟁에서부터 신고전학파인 Alfred Marshal을 거쳐 현대 경제학의 파레토지대(Paretorian rent)까지 일치된 견해가 없다. 논쟁의 초점은 지대의 성격이 잉여(surplus)인가 생산비(cost)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계학에서 소득세(income tax)가 비용인가 이익의 배당인가 하는 논쟁과 비슷하다. 지대에 대한 학파의 대립은 토지관 및 이에 결부된 문제의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30] 지대를 자연가치라고 하더라도 자연가치의 측정문제와 함께 여전히 논쟁의 여지는 있다. 그러므로 지대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노동과 자본에서 정해지는 임금과 이자처럼 명확하게 규명될 수 없는 성질이다.

토지가 공적소유물인 자연을 담고 있는 대표성 자산이라면 공공수요를 위한 공적부담료인 세금(tax)은 토지를 중심으로 부과(지급)되어야 한다. 토지를 중심으로 부과할 때 토지가 부가한 가치인 지대가 바로 세금과 공과금이다. 이렇게 볼 때 지대는 자연가치이고 공적가치이며 기업이 부담할 공적 부담료이다.

2. 지대세제의 방향

성서는 토지를 공적인 소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하나님은 토지를 인간에게 제공한 대가로 경제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는 사적경제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과 노동의 원천에 휴식과 feed-back 기능을 주어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경제주도권, 소득분배권, 생산정지권의 행사는 정부가 맡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행사방법은 세금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토지세제 또는 지대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찌기 다산 정약용에 의해 주장되었고, 서양에서는 Henry Georgy에 의해 강력히 주장되었다.[31] 그러나 세계경제는 Marxism과 자본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이를 무시해 버렸다. 오늘날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경향이고, 자본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도 부가 편중되어 체제수호의 위기를 느끼면서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가 심각하게 거론됨을 볼 때 지대세제는 깊이 있게 연구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특히 토지세는 경제적 효과를 논의할 때에 전가(shifting)와 관련 중립성(neutrality)의 문제가 중요시 된다. 지대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세금은 공적자원인 자연을 담고 있는 토지를 근거로 부과되고, 다른 세금은 형식만 유지하거나 사실상 폐지되어야 한다. 토지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포착이 쉽고, 세금의 산출도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계산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계산방법인 매출액 - 매입액= 부가가치인데 여기서 부가가치 x 지대율 (토지지분율) = 산출세액이라는 기본공식이 성립되므로 계산과정이 지극히 단순하다. 숨길 수 없는 토지와 부가가치세의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장점인 자동통제시스템은 탈세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세무상의 부정을 근원적으로 막아준다. Henry Georgy가 주장한 유일한 단일세는 그 취지만 살리고 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지대세로 부족한 재원과 거래의 질서 유지와 경제통제수단을 위한 보고적 성격을 띈 형식적 기능만 남겨두면 된다. 그러면 토지를 제외하고 재산의 보유, 활용, 소비에 부과되는 9 종목의 직접세와 6 종목의 간접세 13개 종목의 지방세는 명목만 유지하거나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며, 국제무역을 간섭할 관세는 예외가 된다. 우선 지대소득과 직접관계되는 소득세, 법인세,그리고 지방세의 일부만이라도 지대세로 대체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지대세제는 토지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다르며, Henry Georgy 가 주장하는 토지가치의 증식분 즉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와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물론 근본적인 취지는 같은 것이지만 불로소득의 징수는 세금부과의 방법에서 공경비 전액을 토지세에 의존해야 하는데, 불로소득의 측정이 곤란하여 세수의 예

측이 어렵고 불로소득의 세금징수는 그 자체가 불로소득의 소멸효과를 가져오므로 세수결함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토지세는 토지가 생산한 가치 즉, 지대에서 찾아야 한다.

세째, 토지세제 및 지대세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적소유가 보장되므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지금의 토지거래 신고, 허가제 보다 정부의 공적통제가 오히려 줄어든다. 지대의 세금 부과가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하면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자본의 몫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가혹한 사유재산 침해행위이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헌법 23조 1항 및 119조 1항의 규정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23조 2항 및 119조 2항과의 비교형량(trade-off)에 의해 판단되어질 성질이다.

네째, 지대세제는 지가가 비슷한 지역을 중심으로 표준지대를 측정하여 부과함으로써 지역사회(community)중심의 경제체제가 형성된다. 기업이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지고 나아가서 지방자치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지대세제는 토지가 자본에 예속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게 되어서 토지에 대한 접근 용이성은 자동적으로 분배의 형평을 도모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분배의 형평은 범죄를 줄인다고 한다.

여섯째, 지대세제는 토지, 즉 자연의 생산가치를 인정한 결과이므로 공해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생산과 소비에 관계되는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자연가치가 개입되므로써 토지에 담겨진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게 된다.

3. 지대의 측정

경제학이나 회계학에서 가치측정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대 역시 측정의 문제가 심각한 논쟁(issue)거리로 남는다. 만약 정확한 지대의 측정이 가능하다면 지대가 바로 재화의 자연가치(natural value)이며 공적가치(public value)이고 기업이 창조한 부가가치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적부담료가 된다.

지대란 역사적으로 임금과 이자와는 달리 의미가 애매모호하고 학자들간의 의견대립이 심각하다. 지대의 측정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그 측정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시장가격(market value)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기업의 총자산 중에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합리적이지만 토지에 대한 시가의 평가가 극히 어렵다. 시가는 토지의 기능적 가치라기 보다 투기에 의한 기대이익에 따라 평가되고 있고 기업의 장부가치는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로 평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득자본화 방법(income - capitalization)이다. 과거의 지대소득을 미래의 자본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예상지대 ÷ 지대소득률(일종의 할인율)로 측정한다.

세째, 재화의 자연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지대는 곧 자연가치라는 논리에 입각한다. 생산의 3요소에서 토지≧노동≧ 자본 이라는 등식에서 부등호를 제거시킨 토지= 노동 = 자본 일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 때 토지의 기능은 약 33%에 접근하고 자본기능을 무시하더라도 토지와 노동간에는 독립적 기능이 50 : 50 이므로 토지의 기능은 50%이다. 그러므로 지대는 부가가치에서 33%-50%이며 이는 재화 1단위에 대한 자연가치의 비율이기도 하다.

네째,국가의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금은 공적가치의 창조에 대한 국가의 청구권이며 이는 공적소유물인 자연을 담은 토지에서 산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의 조세수입은 국민소득 x 조세부담률이 되고 국민소득은 개별기업의 부가가치 합계이므로 개별기업은 부가가치 x 조세부담률이 된다.

한편 국민의 조세부담을 성서에는 생산물의 10%를 자율적으로 부담하게 했고, 정부제도가 있는 애굽에서는 국무총리 요셉이 20%의 곡물세를 징수 했었다.

현실적으로 조세부담률이 10% 미만이면 국가존립이 어려워지고, 20%가 초과되면 국민의 조세저항(tax conflict)이 강하게 나타나 공경비 지출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조세부담률 20%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의 조세부담률 추세는 1980 - 1985년 기준에서 스웨덴이 50% 선까지 육박하고 있고 한국은 18 - 20% 선이며 필리핀은 13% 선이다.[32] 요셉이 실시한 20%의 곡물세는 기근에 대비한 강제성 조세이므로 자율적 부담인 십일조는 제외되어 있어, 정부의 강제력에 의존하는 조세는 20%를 유지하고, 그 초과액은 기업의 자율적 기능인 각종 공과금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사경제가 공공수요를 위해 부담할 공적부담료는 최소한 10%에서 최고 50% 까지이며, 자연가치가 부가가치의 33% 선이라면 강제성을 띤 세금은 20%이고 기업의 자율적 부담인 공과금은 13% 정도가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에서 세금이 없다는 말

은 사실 부가가치의 100%가 세금이라는 뜻이며 생산한 부가가치의 20%를 노동자에게 직접 배당하였다면[33] 80% 가 세금의 성격을 띤 공경비가 된다. 강제성을 가진 세금만큼 경제생활에서 사적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때 세금은 가능한 한 적을수록 좋다.

4. 성서적 경제통제권

재화의 생산물에 포함된 자연가치,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치, 또는 사적경제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개입할 가치(공적가치 또는 사적자유 침해율)를 측정함에 있어 하나의 방안으로 성서가 제시하는 경제통제권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님은 토지에 담긴 천연자원을 인간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만큼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레위기에서 규정한 경제주도권, 소득분배권, 그리고 생산정지권에 대한 통제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통제권	행 사 방 법	기 능	제한비율
경제주도권	제물과 헌물, 수확물 유보, 첫열매를 드림	신과 자연의 몫, 제사장 또는 무소득자의 몫	3%(?)
소득분배권	확정된 소득의 10%	공적경비, 제사장 또는 무소득자의 몫	10%
생산정지권	안식일과 절기(단기) 안식년, 희년(장기)	자연과 노동의 휴식, 생산과 소비조절, 자연과 무소득자의 몫	약20%

경제통제권의 행사는 약 33%에 접근한다. 그 근거는 우선 소득분배권으로서 소득의 약 10%이다. 생산정지권은 노동금지일 즉, 휴식일수가 된다. 단기로 7일 마다 1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각종 절기에도 노동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으나 1년에 약 3주간을 추정할 수 있다.[34]

그러면 1년의 자연일수 365일에 휴식일수는 73일이므로 $\frac{73}{365}=20\%$ 이다. 제물등과 수확유보조치의 경제 주도권은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기조절력의 최소기준을 3% 로 제안하고 있어 3% 정도를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경제주도권 3%, 소득분배권 10%, 생산정지권 20%, 합계 33%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50년을 경제체제의 존속기간으로 규정하고 7년마다 1년을 쉬고 7년이 7번 계속되는 49년과 50년은 쉬면서 체제를 개혁하게 된다. 50년간 8년을 쉬는 휴식일수와 단기 휴식일수의 이중계산을 제거하면

$$\frac{365\text{일}\times 8\text{년}-73\text{일}\times(50\text{년}-42\text{년})}{365\text{일}\times 50\text{년}}=\frac{5986\text{ 일}}{18250\text{일}}$$

$=32.8\%$ 로 약 33%에 접근한다.

장기적기준에서 안식년과 희년을 생산물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물과 십일조는 제외되어야 하고 포함을 한다고 해도 33 + 13 = 46% 이다. 이러한 방법이 성서의 우화적 해석에 따른 무리한 계산방법이 아니라면 재화의 자연가치는 33% - 50% 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하루의 $\frac{1}{3}$ 인 8시간이 생산시간이라면 실질 생산시간은 50년 전체 자연시간의 20.5%에 불과하며 선진국의 실질노동인구는 어린이, 노인등을 제외한 40% - 50% 수준이므로 실질생산시간은 10% 미만이다.[35] 이는 생산물 1단위로 24시간을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인구가 하루의 10%인 2.4시간의 노동 투입으로 50년간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재화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로만 설명하는 노동가치설은 무리가 있다. 물론 노동이 투입되지 않으면 자연도 자본도 가치가 인식되지 않으므로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노동만 가해지면 주어지는 자연가치와 창의성의 결과인 자본의 생산성을 동시에 인정해야 할 것이다.

5. 몇가지 제안점

지대세제가 성서적 경제원리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에 접근하는 사회의 인식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더 나은 연구와 현실적 적용에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 사회현상을 설명하면서 흔히 경험하는 것이 감정적 흑백논리에 의한 독단(dogma)이 역사적인 시행착오를 범한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중심의 경제관은 체제와 이념(ideology) 문제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계층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므로 인식을 바로하지 않으면 논의의 시작에서 부터 잘못된 선

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 예로 토지공개념(공유재산제도)을 내세웠던 다산의 경제사상은 천주교와 연류되어 그 시대의 기득권층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 또한 토지단일세론자 Henry Georgy를 평하면서도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조아의 마지막 수호자로 악평하였고, 자본주의 신봉자들은 그를 사회주의자로 보고[36] 경제적 이단자로 규정했던 것이다.

성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여1:7) 하여 극단론을 배격하면서 율법의 준수(마5:17)와 복음을 통한 인간해방을 분명히 제시한다. 즉,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개인구원과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구원이 양분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대세제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위해서 몇가지 언급하여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토지의 이용과 소유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있어야 하겠다. 성서가 토지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토지투기(이용목적이 아닌) 로 인한 부의 축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는가 기존의 토지소유제도가 성서적 토지법인가 바알(Baal)의 토지법[37] 에 가까운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규명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효율(성장)과 형평(분배)에 대한 소위 보수신학과 개혁신학의 차이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정치적으로 이념문제이다. 토지중심의 경제관은 자본주의체제가 가지는 장점들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는 기본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토지의 공적이용이라는 외양만을 의식하고 간혹 사회주의 경제관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대세제의 본질이 유물론에 근거하는 Marxism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지대세제는 성서적 경제원리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개혁적 입장이며,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기존의 제도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우상화된 이념논쟁은 이제 종식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기독인의 관심은 이데올로기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내에서 개인이 개인을, 집단이 집단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다.

세째, 역사적으로 볼 때, 개혁의지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극복이다. 토지의 균점이용 또는 공적이용을 지향하는 경제사상은 조선조 후기부터 실학파들에 의해 강력히 대두되었으나 시대적 가치관은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류형원의 균전제, 박지원의 한전제, 그리고 다산의 여전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다산의 연구 업적은 시대와 환경을 감안할 때에 Henry Georgy에 비교되는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때를 맞춰 전래된 천주교의 자생적 신앙활동과 실학사상은 유교의 형식문화와 불교의 현실도피적 가치관에 기인한 각종의 폐습을 타파하고, 공리공론의 학문이 실사구시의 학문으로 바뀌어 민족웅비의 르네상스[38] 를 맞이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관습은 이 시대의 탁월한 개혁의지를 재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가혹한 박해와 냉대를 서슴지 않았다.

이를 볼 때 제도의 개혁은 가치관의 변화가 앞서야 하고 그 방법은 성서를 통한 복음전파가 선결과제이다.

네째, 연구방법적인 면에서 공동체적 연구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이므로 학문도 경제생활도 나눔으로써 학문적 koinoia를 이루어야 한다. 지대세제는 이론적 기반을 위한 연구와 병행하여 제도적 실현을 위한 가시적 활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이 곧 성령운동이고 복음화 운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한국헨리죠지협회 등의 공동체의 역할이 기대된다. 기독인의 관심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지 어떤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본받는 사람이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39]

다섯째, 학문의 자주성과 수용성이다. 외국의 우수한 선진이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분별한 수용은 문화를 병들게 한다. 외국문헌을 무조건 '원서(original)'라고 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Henry Georgy의 경제사상도 중요하지만 실학파의 토지사상부터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조건들이 지대세제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토지중심의 성서적 경제 원리는 막힌 담을 헐어서(엡2:14) 분단극복의 경제적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줄 믿는다. 우상숭배의 결과 정신문화가 피폐해지고 그에 따른 공리공론, 파벌의식은 국권상실과 동족상잔을 자초하였다. 분단의 비극은 민족적 수치이지만 40 년 이상 한쪽은 자본주의, 또 한쪽은 사회주의를 해봄으로써 너무나도 값진 역사적 체험을 하였다. 교계 일각에서는 한국의 희년을 분단극복에 두고 있다. 지대세제는 체제와 이념문제에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체제를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대천덕 신부는 "지대세제를 채택한다면 남북간의 경제격차로 인하여 당하는 수치를 단시간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40] 이라고 하여 지대세제의 조기실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제6장 맺음말

마을 뒷산에 맑은 생수가 솟아흐르고 있다고 하자. 이 물은 파이프로 가정까지 연결시켜 놓으면 물은 자연력에 의하여 스스로 흐르면서 각 가정에 고르게 분배된다. 물이 솟아 흐르는 것은 자연가치이고 파이프를 만들어 설치한 것은 노동가치이며 파이프 자체는 도구로서 자본가치이다.

토지의 균점이용을 지향하는 지대세제는 경제시스템에서 바로 이러한 물의 흐름(생산)과 분배의 역할을 하게 되어 성서적이며 인간의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파이프시설이 부르조아적 계급을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물의 자연력을 도외시하고 물지게로 생산,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비능률을 초래한다. 한편 자본주의 역시 물의 흐름을 방치하다가 마을 밑에서 저수지를 만들고 펌프로 퍼올리는 생산 분배 시스템에 가깝다. 물은 흐르면서 오염되고 생산 분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은 톱니처럼 맞물려서 어느 하나에 손을 대면 3개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원인적 요인과 결과적 현상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토지는 노동과 자본에 완전히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위계질서상 상위에 있다. 경제에 대한 이론이나 정책은 결과적 현상보다 원인적 요인이 되는 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의 핵심을 토지에 두는 지대세제는 바로 이러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지대세제에 대한 개념적 구조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성서적 경제원리에 부합한다는 하나의 가설(hypothesis)에 불과하다. 이를 현실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뒷받침과 증명을 요하는 실증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토지중심적인 경제이론은 토지공개념의 도입 요구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편승한 것으로 고전학파나 자연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낡은 이론으로만 보지 말고 조심스러운 탐색과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토지는 소유와 탐욕의 신인 '바알'우상의 것이 아니고, 창조와 나눔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것이다.

○ 주(註)

1) 양승훈, 현대과학정신과 기독교적 대응,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집 1989. 52쪽.

2) 양승훈, 자연과학과 기독교신앙,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통합연구 제2권 1호, 1989. 7쪽

3) 제사법은 반드시 피를 요구(레17:11)하며, 땅을 원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무른다"의 뜻에서 구속(redemption)이라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보혈과 연결된다.(대천덕,성경적경제원리,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출판부,1989, 27쪽 참조)

4)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올림픽 경기의 성화와 같이 경제생활의 "fare play"를 강조하며, 첫열매 첫새끼의 요구는 인간이 자연에 버리는 쓰레기의 청소비에 불과하다.

5) 김진홍, 주님가르치신 기도, 두레성서연구모임, 성서한국 제 2호, 1988. 68쪽

6) 대천덕, 성경적 경제의 기초원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89, 51쪽

7) 이정전, 토지경제론, 박영사, 1989, 340쪽

8) 한영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실학연구입문, 역사학회), 일조각, 1986, 338-343쪽(박영조, 정치경제학 연구, 한그루,1988, 44쪽에서 재인용)

9) 대천덕·고왕인, 성서적 경제관(통일의 초석), 한국헨리죠지협회, 1989, 5-12쪽

10) 이정전, 위의 책, 340쪽

11) 여기서 역학관계는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의 기술적 결합과 사회적 결합에서 미치는 힘으로써 상호간의 영향력을 말하며, 독립적이라는 것은 생산요소의 상호간에 독자적인 고유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12) 생산과정에서 토지, 노동, 자본의 기능이 미치는 위계적 질서를 말하고, 생산과 분배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13) 김영민 역, 자본론 I-1, 이론과 실천, 1987, 217쪽

14) 고정일 역, 자본론과 베레스트로이카(야 베브즈넬 원저) 참한, 1989, 62쪽

15) 고정일, 위의 책, 머리말 참조

16) 차병권, 재정정책론, 박영사, 1979, 35쪽

17) Robinson, Joan & Eatwell, John,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Maidienhead : McGraw-Hill, 1973(주종환 역, 현대경제학 비판,일조각, 1984, 278쪽)

18) 국민경제에서 증권시장, 사채시장의 큰손,협박, 사기, 정치적 권모술수 등으로 나타나고 국제경제에서는 경제적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19) 김세열, 경제윤리, 한남대학교 출판부, 1985, 69쪽

20) 변형윤 외 2인 공저, 경제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5, 35쪽

21) 김세열, 토지에 대한 성경적 견해,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출판부, 1989, 9쪽

22) 이정환, 경제학원론, 법문사, 1975.392-393쪽

23) 이정호,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23-24쪽

24) 이정호, 회계원리, 경문사, 1980, 89쪽

25) Abrams Raymond, Total Tax Relife(A Concept of Liberty, Justice and Equality), New York: Calton Press, 1986. p.46

26) 남상호, 회계이론, 일신사, 1979, 853-28 쪽

27) 막스웨버(Max. Weber 1864-1920)가 1904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논문에서 유래됨.

28)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족, 법인등을 말함(법인세법 제20조).

29) Morley, Michael,F.,"The Value added Statement in Britain", The Accounting Review,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July 1979, pp.624-625

30) 이정전, 위의 책, 1989, 179쪽

31) Georgy Henry, Progress and Poverty (Condensed by A.W.Madsen), London : Hogath Press, 1961, Chapter 22.

32) 이우택, 세무회계통론, 조세통람사, 1989, 43쪽

33) 사유재산권은 부정되므로 개인소득세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폴란드는 세율이 90%까지 부과된다(오용석, 공산권 경제의 탈마르크스 경제학, 슬라브연구사, 1988, 328 쪽 참조).

34) 무교절에 2일간 노동이 금지되고, 장정은 성막에 모여야 하고(신16:16), 초막절 8일간은 초막에 기거해야 하므로 사실상 노동금지효과가 있으며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도 금지되고, 매월 초하루는 월삭으로 노동이 금지된다. 한국은 법정공휴일이 19일이고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개인의 휴가 일수를 감안하면 성서의 휴식일(노동금지일)과 비슷하다.

35) E.F.Schumacher 박사는 총 사회시간(총 인구수 x 자연시간)중 노동참여 시간은 3.5%이고 나머지 96.5%가 잠을 자거나 놀고 있다고 한다.(배지현 역,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전망사, 1983, 154 쪽)

36) 이정전, 위의책, 297 쪽

37) 대천덕, 토지와 자유, 도서출판 무실, 1989, 48-50 쪽

38) 조상국, 크리스챤 경제학자로서의 학문연구, 통합연구 제2권 3호,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출판부, 1989, 98 쪽

39) 조무성, 기독교문화형성, 통합연구 제2권 3호,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출판부, 1989, 134 쪽

40) 대천덕, 두체제를 잇는 가교- 지대세제(기독교대학 제45호 1989.8)